

춘천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309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왕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변 론 종 결 2023. 1. 25.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와 C 사이에,
가. 2018. 9. 7. 체결된 합의계약서 1.의 1.2.항에 기술된 “두번째 그룹”은 2014. 4. 3. D이 E
주식회사에 별지1 기재 주식을 이전한 절대적 판매 계약서의 유효성과
진정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한다” 부분에 관한 법률행위,

나. 위 가항 기재 합의계약서 1.의 1.4항에 기술된 “두번째 그룹’은 D이 2014. 2. 6. 강원도 춘천시 F 소재 G공증사무소에서 C에 의하여 실행된 E, H, I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한 공증된 서류에 대하여 인식하고 유효하며 진정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한다” 부분에 관한 법률행위,
다. 위 가항 기재 합의계약서 3.의 1. 11.항에 기술된 “두번째 그룹’은 별지2 기재 주식은 C를 위하여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이 주식들은 마찬가지로 2014. 2. 6.자 C에 의하여 실행된 소유권 양도 계약서에 따라 B에게 이전된다” 부분에 관한 법률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2 기재 각 주식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1. J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J으로부터 K 발행 보통주식 14,000주 및 L 발행 보통주식 28,700주를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C는 J이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J은 원고에게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위 가항 기재 주식을 인도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J,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3048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4. ‘C는 J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필리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하고, H 및 E와 함께 ‘첫 번째 그룹’이라 한다)는 2018. 9. 7. C, D, M, N, O, P, Q, R, S, T, U(이하 ‘두 번째 그룹’이라 한다)와 상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를 필리핀 공화국 제7 사법지역지방법원 제11부, 제69부에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그들의 분쟁들에 대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사자 간의 지루하고, 실증 나며, 부담되는 모든 사건들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계약서를 체결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합의조건을 정하기로 동의하였다.

1. H, E, I의 소유자에 대한 인식

1.2. 두 번째 그룹은 2014. 4. 3. D이 E에 대한 그의 주식 5,000주를 이전한 절대적 판매계약서의 유효성과 진정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한다. (후략)

1.4. 두 번째 그룹은 D이 2014. 2. 6. 강원도 춘천시 F 소재 G공증사무소에서 C에 의하여 실행된 E, H, I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한 공증된 서류에 대하여 인식하고 유효하며 진정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한다. (후략)

3. 권리들의 양도 및 이행

1.11. 두 번째 그룹은 H의 망 V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들은 C를 위하여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이 주식들은 마찬가지로 2014. 2. 6.자 C에 의해 실행된 소유권양도계약서에 따라 B에게 이전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합의계약서에서 정한 ‘첫 번째 그룹’은 H, E, I 3개 법인의 한국인 주주 및 임원(B, W, X, Y, Z, AA, AB)과 필리핀 주주 및 임원이 그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두 번째 그룹’은 모두 C의 관계인들로서 C가 그 실질적인 당사자이다. 그런데 C는 원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C의 필리핀 소재 재산에 관하여 추심을 진행하자 2018. 9. 7. 피고 등과 통모하여 피고 등에게 망 V, D 등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던 별지1, 2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C와 피고는 원고를 사해할 의사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계약서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관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는 2014년이고, 이 사건 합의계약서의 체결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그리고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망 V, D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계약이 실질적으로 C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계약서 1.의 1.2.항은 위 계약의 당사자들이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4. 3.자 주식양도계약의 유효성과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계약서 1.의 1.4.항 및 3.의 1.11.항은 각 위 계약의 당사자들이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2. 6.자 주식양도계약의 유효성과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C와 피고 등이 위 각 조항에 대한 합의로써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C와 피고가 체결한 2014. 2. 6.자 주식양도계약 및 2014. 4. 3.자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인 2014. 2. 6. 및 2014. 4. 3.로부터 5년을 초과한 2021. 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 체결된 각 주식양도계약은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개시되거나 곧 개시될 시점에 C와 피고가 통정하여 체결한 가장매매로서 무효이고, C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은 이 사건 합의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년에 체결된 각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약이 C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E, I 3개 법인을 운영하였던 W이 다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291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합의계약서는 C가 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각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은 2014년에 인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판사 지예현, 판사 배성준

별지